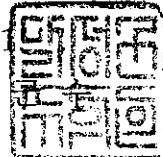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13
------------	-----

제출년월일 : 2005.

제 출 자 : 달 성



□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정이유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민방위 등 다원화 되어있는 안전관련제도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기능별로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 2004. 6. 1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문화 운동추진, 재난관리기관간의 업무협의·조정 등으로 함(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은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30인 이내로 구성 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당연직은 제외)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음(안 제4조)
-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안 제6조)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기관간의 업무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9조)
- 필요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제정조례안 : 따로 불임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 입법예고 : 2004.11.20 ~ 2004.12. 9.(특이사항 없음)
- 예산조치 : 2005년도 당초예산(700천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부군수
 2.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달성소방서장
 4. 달성경찰서장
 5. 육군 제8251부대 7대대장
 6. 달성교육청 교육장
 7.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